

## 2026년 파주시 파주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공고

2026년 파주시 파주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4일

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채용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- 지역보건법 제15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)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
-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### 2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

| 임용직위           | 임용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용인원 | 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파 주<br>보 건 소 장 | 지방과학기술<br>서기관<br>또는<br>일반임기제<br>(개방형 4호) | 1명   | <b>&lt;파주보건소 업무 총괄&gt;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집행</li><li>○ 감염병의 예방·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</li><li>○ 의료인 및 의료기관, 약사, 약국 등 지도 및 응급 의료, 보건실험 또는 검사 등</li><li>○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진단, 질병관리 및 건강 증진, 보건교육 등</li><li>○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</li><li>○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,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 등 보건의료사업</li><li>○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, 그밖에 보건의료 향상, 증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</li></ul> |

※ 임용기간 : 2년(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)

### 3 임용 신분

-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, 승진,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  -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근무기간 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신분 유지
- ※ 임용신분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함.

### 4 응시 자격요건

- 기본자격
   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※ 주소·성별 : 제한없음 /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- 자격요건
    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

| 구분          |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력<br>기준    | (박사학위 소지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(석사학위 소지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격증<br>기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무원<br>경력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<li>-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</ul>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민간<br>경력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
| <b>※ 관련분야</b><br>- 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5 응시 결격사유

### ■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6 접수방법 및 일정

### □ 접수방법

○ 접수장소 :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※ 주소 : (10932)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

※ 응시수수료 : 5급(가급) 이상 1만원

#### 【방문접수】

- 평일 09:00~18:00 접수(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), 접수마감일 18:00 이후 접수 불가
- 파주시청 민원여권과(민원동 1층)에서 응시수수료 납입 후 접수처에 제출  
(원서접수 당일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)

#### 【우편접수】[우편확인을 위해 발송 후 인사팀(031-940-4126) 확인전화 필수]

- 가급적 빠른등기로 송부 권장
-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통보
-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※ 택배, 퀵서비스 불가
- 응시수수료 우편통상환(우체국에서 판매) 구입·동봉 ※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가
- 우편접수 시 구비 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:00까지로, 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 불가
- 우편봉투 겉면 ‘2026년 파주시 파주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응시원서’ 문구 표기

### □ 시험일정

| 응시원서<br>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전형<br>합격자 발표        | 면접시험        |    | 최종합격자<br>발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일시          | 장소 |             |
| ’26. 10. 26.(월)<br>~ 10. 30.(금)<br><5일간> | ’26. 11. 6.(금)<br>전·후 | ’26. 11. 예정 | 미정 | ’26. 11. 예정 |

※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7 시험방법

### ○ 1차 서류심사(형식요건 심사)

-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,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
-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,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, 유효기관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.

### ○ 2차 면접시험(적격성 심사)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 실시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및 인격(대인관계) 검증
- 심사대상 능력요건 : ① 전문가적 능력, ② 전략적 리더십, ③ 변화관리 능력, ④ 조직관리 능력,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

## 8 제출서류

※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금지)

### 【제출서류 유의사항】

-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류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기재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
-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(요구기간 내 제출분만 인정)
- 외국어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
- 증명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, 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 지참

### ①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1호 서식]

- 응시수수료 : 1만원 ▶ 파주시 수입증지 첨부(파주시청 민원봉사과)

### ② 이력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### ③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3호 서식]

###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[별지 제4호 서식]

⑤ 동의서 3부 [별지 제5호 서식]
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/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안내 /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[별지 제6호 서식]

-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하여 제출(중복표시 가능)

⑦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[별지 제7호 서식]

⇒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

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.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

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(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)

**【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】(필독)**

- ①근무부서, ②근무기간, ③담당업무, ④주 단위 근무시간(혹은 근무형태), ⑤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, ⑥발행기관 직인 필수

※ 하나라도 회사 별도 양식에 없을 시 업무분장표 등 증빙서류 혹은 [별지 제8호 서식] 활용

※ 발급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(양식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)
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(기관 도과 시 경력 불인정)

-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

- 비상근(시간제근무)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. 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또한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(상근 또는 전일근무) 명시하여 제출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→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폐업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제출

-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 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

-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경력증명서 발급 시 관련 분야임을 서류에 명시하여 제출

-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

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

- 제출한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⑪ 자격증 사본 1부(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(해당자에 한함)

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(해당자에 한함)

## 9 보수수준

### ○ 연봉

- 경력직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
- 임기제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**연봉하한액**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의 경력·능력·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% 범위 이내 책정

(단위 : 천원)

| 임용예정 직위 | 임용직급   | 연봉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
|         |        | 상한액 | 하한액    |
| 파주보건소장  | 개방형 4호 |     | 70,490 |

- 연봉 외 급여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10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 관련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위·변조 등 부정행위로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, 또는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.
-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하며,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-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요청 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 가능합니다.(합격자는 반환하지 않음)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으며, 채용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(☎031-940-4126)으로 문의 및 홈페이지([www.paju.go.kr](http://www.paju.go.kr)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